

##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허가번호	제 호	허가 연월일	
상 호			
영업장소			
대 표 자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번호: )	
폐업일			
사 유			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 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6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. 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」 제 55조제 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### 참고사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 8조제 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
### 처리절차

